

「구미시 무장애 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·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한 시장의 책무(안 제5조)
-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(안 제6조)
-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등편의법」 등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공공시설 등에 접근하여 이용할 때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22년 12월 기준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1만 7천 명 정도로 시 인구의 약 4%를 차지하나, 도로 및 시설물과 건물의 진입턱 등의 장애물로 보행 및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노인·영유아·임산부 등의 시민은 약 21%로 추산됨.
- 보행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생활 편리를 추구하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